

# 2017학년도 대학평의원회

간사

의장

## 회의록(4차)



이한수

일시	2018. 01. 29.	( 월요일)	15:00	장소	본관 3층 중회의실
참석위원	안승섭(교무처장), 김성찬(기획처장), 김희덕(건설공학부), 유호정(글로벌통상학과), 윤태한(글로벌통상학과), 유병선(사무처장), 류장호(학생부장), 김준환(기획팀장), 서석교(재무팀장)			불참위원	고재열(총학생회장), 이한수(경일대학교 동문대표)
안건	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(안) 심의				

### 토의내용요지 및 합의사항

◎ (의장) 성원이 되었으므로, 개회를 선언함

#### 【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(안) 심의】

#### ■ 토의 및 결의 사항

##### <토의 사항>

- ◎ (의 장) 경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, 규정 개정 관련 의견을 평의원들에게 요구함.
- ◎ (평의원) 규정개정 취지에 대해 질의함.
- ◎ (의 장)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고, 회의 개최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임을 설명함.
- ◎ (평의원) 규정 제3조(위촉)에서 교원 평의원 중 총장이 추천하는 교원 2명에 대한 위촉 세부기준을 규정에 명시 할 것에 제시함.
- ◎ (의 장) 타대학 규정과 비교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 대학평의원회에서 재논의 할 것을 제안함.
- ◎ (위원전체)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함.

##### <결의 사항>

- ◎ (의 장) 경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심의·의결 하기로 함.

<뒷면 계속>

김성찬	김희덕	유호정	윤태한	유병선	류장호	김준환	서석교	고재열	이한수
								불참	불참

**토 의 내 용 요 지 및 합 의 사 항**

현 재 내 용	개 정 안	비 고
<p><b>제2조(자격)</b> 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원 평의원은 경일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부교수 이상인 자</li> <li>2. 직원 평의원은 경일대학교 사무직원으로서 7급 이상인 자</li> <li>3. 학생 평의원은 3학년 이상의 재학생</li> <li>4. 기타 평의원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</li> </ol> <p>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p> <p>③교원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 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휴직 및 퇴직</li> <li>2.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</li> <li>3.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및 연구년 교원</li> </ol> <p>④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 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휴학 및 졸업</li> <li>2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</li> <li>3. 교환학생으로 3개월 이상 파견</li> </ol>	<p><b>제2조(구성 및 자격)</b> ①<u>평의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교원 5명(이하 “교원 평의원”이라 한다)</u></li> <li>2. <u>직원 4명(이하 “직원 평의원”이라 한다)</u></li> <li>3. <u>학생 1명(이하 “학생 평의원”이라 한다)</u></li> <li>4. <u>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(이하 “외부 평의원”이라 한다)</u></li> </ol> <p>②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원 평의원은 경일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부교수 이상인 자</li> <li>2. 직원 평의원은 경일대학교 사무직원으로서 7급 이상인 자</li> <li>3. 학생 평의원은 3학년 이상의 재학생</li> <li>4. 기타 평의원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</li> </ol> <p>③<u>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<u>교원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 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휴직 및 퇴직</li> <li>2.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</li> <li>3.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및 연구년 교원</li> </ol> <p>⑤<u>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 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휴학 및 졸업</li> <li>2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</li> <li>3. 교환학생으로 3개월 이상 파견</li> </ol>	<p>문구 추가 조항 추가</p>
<p><b>제3조(위촉)</b> 정관 제35조의3에서 규정한 평의원의 임명 및 위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</u> 총장이 추천하는 교원 2명과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 5명의 평의원을 총장이 위촉한다.</li> <li>2. <u>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</u> ‘사무처장’ 1명과 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 4명의 평의원을 총장이 위촉한다.</li> <li>3. <u>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</u>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명을 총장이 위촉한다.</li> <li>4. <u>기타평의원은</u> 총장이 위촉한다.</li> </ol>	<p><b>제3조(위촉)</b> 정관 제35조의3에서 규정한 평의원의 임명 및 위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교원 평의원은</u> 총장이 추천하는 교원 2명과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 5명의 평의원을 총장이 위촉한다.</li> <li>2. <u>직원 평의원은</u> ‘사무처장’ 1명과 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 4명의 평의원을 총장이 위촉한다.</li> <li>3. <u>학생 평의원은</u>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명을 총장이 위촉한다.</li> <li>4. <u>외부 평의원은</u> 총장이 위촉한다.</li> </ol>	<p>문구 수정</p>
<p><b>제6조(회의)</b> ①항 생략</p> <p>②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</li> <li>2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li> <li>3.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</li> </ol>	<p><b>제6조(회의)</b> ①항 최종</p> <p>②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이사장 또는</u>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</li> <li>2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li> <li>3.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</li> </ol> <p>③<u>회의 개최 시 회의 10일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하며, 회의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, 의장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의 개최 및 진행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.</u></p>	<p>문구 추가 조항 추가</p>
<p><b>제8조(회의록)</b> 평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후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8조(회의록)</b> ①<u>평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후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<u>평의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단,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의위원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조항 추가</p>
	<p><b>부 칙</b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</p>	